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추진  
촉구 결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79
----------	-----

2023년 5월 2일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3. 27. 박환희 의원 등 60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4. 26.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3년 5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한일양국은 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균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것임.
-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는 지난 1988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음.
-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 서울과 도쿄의 인적교류 등 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음. 양국 정부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한국 주도적 해법을 거듭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함.

###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해당 없음.
-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결의안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지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결의안의 배경 및 타당성 검토

-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sup>1)</sup>한 바 있음.
-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sup>2)</sup>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화이트리스트) 배제(2019.7.),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2020)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2018.10.30.),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2건에서 피고인 일본기업(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함(2018.11.29.).

2) 한일청구권협정 :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1965년)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는 내용임.

- 그러나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과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강제동원 현안의 미결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가 높아졌음.
- 우리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개최하고,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2023.1.12.) 한 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음(2023.3.6.)(붙임 1).
  -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sup>3)</sup>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 또한,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판결금 등을 지급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sup>4)</sup>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밝힘.
- 일본 정부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다고 밝힘(2023.4.28.).
- 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2014.6.2.)된 공익법인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추념 및 문화, 학술,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함.

4)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이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것으로 평가됨(1998.10.8.).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 부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대, 정부 입장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부재 등으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붙임 2).
- 결의안은 최근 계속되는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하고 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정부 입장에 대해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입장 철회와 일본의 사죄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3 종합 의견

- 본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지하면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결의안”은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교육지책이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시의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기본방향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이 요구됨.
  -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2023.3.30.)과 본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명부가 제출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1명, 찬성 8명, 반대 3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일본의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과가 필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안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79
----------	-----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3월 27일

발 의 자 : 박환희,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현기,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60명)

##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함.

## 2. 제안이유

- 한일양국은 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것임.

-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는 지난 1988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음.
-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 서울과 도쿄의 인적교류 등 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
-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음. 양국 정부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한국 주도적 해법을 거듭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적극 지지하고자 하는 것임.

### 3. 이송처

- 대통령실, 정부부처

#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 주도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아울러 이번 발표가 경색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힘찬 시작이자,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일양국은 수교가 맺어진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지소미아 등 우리 경제안보 전반에 걸쳐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일본의 수도 도쿄는 지난 1988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경제,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때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물론, 서울과 도쿄의 도시 간 교류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반일감정을 자극한 감정적 외교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과거만을 바라보며 미래로 가지 못하면 이는 우리 국익에 손해만 줄 뿐이다.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미 늦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영킨 실타래를 방치한 채 우리 세대가 풀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함이 아니요, 미래 세대를 위하는 길도 아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 정부가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한국 주도적 해법을 거듭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2023년 3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